

측량기준점표지 이전비용 국가가 부담

국토지리정보원 측지과 (☎ 031-210-2651)

- 측량기준점표지 이전 비용을 설치자인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 (2013년 7월 17일개정 공포) 되었습니다.
 - 지금까지 법령은 국가에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 비용을 매설 부지를 무상으로 협조한 토지소유자(신청자) 가 부담하도록 규정(「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제9조) 되어 있어
 - 토지 사용의 제약과 이전 시 발생하는 비용(1천만원/1점)은 토지소유자에게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여 다수의 민원발생과 신규 설치 시 매설부지 제공에 비협조 등 행정력 소요가 발생하였습니다.
 -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비용 부담이 해결되어 기준점 무단 훼손과 매설부지 비협조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소요가 줄게 되었습니다.

☞ (참고)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> 국토교통뉴스 > 보도자료> 측량기준점표지 이전비용 국가가 부담

<측량기준점표지 이전비용 국가가 부담>

- ▶ 추진배경 : 측량기준점표지 이전 비용을 토지소유자(신청자) 부담에서 설치자인 국가 부담으로 법 개정
- ▶ 주요내용
 - ① 측량기준점 이전 시 이전 비용을 측량기준점 설치자(국가) 부담으로 법 개정
 - ② 「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(2013. 7. 17개정 공포)
- ▶ 시행일 : 2014.1.18.